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81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신영대·진선미·이성윤

황명선 • 안규백 • 김윤덕

이광희 • 민형배 • 김성화

박지원 · 윤준병 · 임오경

민병덕 의원(13인)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 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 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의사가"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로, "진료를"을 "진료 또는 응급의료처치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료업을 하는 <u>수의사가</u> 동물의	<u>수</u> 의사 또는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	<u>병원 개설자가진료 또</u>		
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는 응급의료처치를		
아니 된다.			